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. 5. 18 선고 2016가단483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II|고B

변로 종결 무변로

판결 선고 2016. 5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경기도 고양시 C 임야 4959㎡ 중 별지 지적현황도에 표시한 ㉠, ㉡, ㉢, ㉣, ㉤, ㉥, ㉦, ㉧, ㉨, ㉩, ㉪, ㉫, ㉬, ㉭, ㉮, ㉯, ㉰, ㉱, ㉲, ㉳, ㉴, ㉵, ㉶, ㉷, ㉸, ㉹, ㉺, ㉻, ㉼, ㉽, ㉾, ㊀, ㊁, ㊂, ㊃, ㊄, ㊅, ㊆, ㊇, ㊈, ㊉, ㊊, ㊋, ㊌, ㊍, ㊎, ㊏, ㊐, ㊑, ㊒, ㊓, ㊔, ㊕, ㊖, ㊗, ㊘, ㊙, ㊚, ㊛, ㊜, ㊝, ㊞, ㊟, ㊠, ㊡, ㊢, ㊣, ㊤, ㊥, ㊦, ㊧, ㊨, ㊩, ㊪, ㊫, ㊬, ㊭, ㊮, ㊯, ㊰, ㊱, ㊲, ㊳, ㊴, ㊵, ㊶, ㊷, ㊸, ㊹, ㊺, ㊻, ㊼, ㊽, ㊾, ㊿, 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약3306㎡) 중 같은 도면 표시 1, 2,

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.58m²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㉠부분 330.58m² 토지를 인도하라.

나. 30,000,000원 및 2016. 3. 8.부터 위 ㉠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준희

별지